

『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1년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시정의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하여 왔음
- 지난 6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성숙한 위원회로 개편, 미래지향적인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위원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(안 제3조)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(안 제4조)
- 기능은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강화, 현안과제 해결방안 제시, 정책수행 효율성 향상,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연구 및 자문토록 규정(안 제5조)
-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,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(안 제7조)
-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을 규정(안 제8조)
-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,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토록 규정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
- 「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규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2001년부터 「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규정」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「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으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제정안임.
- 주요 제정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20인이내로하고 위원은 각분야 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음.

- 조례안 검토결과 재 검토사항은 2가지 입니다

1) 조례 제명건입니다.

- 안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조례제정 「목적 및 용어」 정의를 하면서 본문 내용 대부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조례제명을 「위원회」로 하지않고 토론의 성격에 해당하는 「구미시정책연구포럼」이란 제명을 쓰는 것은 위원회 조례제정 목적에 상반되는 용어로 판단됨.
- 2001년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는 「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규정」의 내용과 금회 제정 조례안 내용을 비교한 결과 위원수를 30인에서 20인 이내로 감축하는 것외에는 위원의 임기, 위원의 기능, 회의방법 등 내용 대부분 당초규정과 유사한 내용임.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「심의회」또는 「위원회」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론의 성격인 「포럼」을 제명으로 명시하면서 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은 「위원회」조례제정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.

2)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 및 구성원에 관한 내용입니다.

- 안 제3조 중 위원회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 하고, 위원은 「각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」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였음.
-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원을 관련분야 학계·연구소의 전문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「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」로 위촉범위를 광범위하게 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수가 과도한지 여부 등 구성원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못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음.

○ 그러므로 안 제1조 및 제2조의 「조례제명」의 타당성과 안 제3조제2항의 「위원회 구성원 자격기준」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.